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3일

노 원 구 청 장



1. 공고기간 : 2026. 9. 3. ~ 2026. 9. 17.(14일간)
2. 공고방법 :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공고내용

가. 공고 제목		부동산등기신청 지연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			
나. 대상자	성 명	허*			
	주 소	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5길 **, ***동 ***호			
다. 위반내용		부동산등기 신청 지연			
라. 부동산의 표시		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***, ***동 ***호			
마. 법 적 근 거		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」 제2조 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」 제11조			
바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	부동산등기신청 지연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과태료 금액 : 619,000원(의견제출기한 내 납부 시 495,200원)			
사. 기타(문의처)	제	기관명	서울특별시 노원구청	부서명	부동산정보과
	출	주 소	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		
	처	연락처	☎ 02-2116-3627 FAX 02-2116-4625		

4. 기 타 사 항

- 가. 공고 기간 만료 시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(송달의 효력 발생)에 따라 본 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(☎02-2116-362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 부과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
2026년 9월 3일

노 원 구 청 장



1. 공고기간 : 2026. 9. 3. ~ 2026. 9. 17.(14일간)

2. 공고방법 :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
3. 공고내용

가. 공고 제목		부동산등기신청 지연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			
나. 대상자	성 명	황**			
	주 소	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길 ***-**, *동 ***호			
다. 위반내용		부동산등기 신청 지연			
라. 부동산의 표시		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***, ***동 ***호			
마. 법 적 근 거		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」 제2조 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」 제11조			
바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	부동산등기신청 지연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과태료 금액 : 390,000원(의견제출기한 내 납부 시 312,000원)			
사. 기타(문의처)	제	기관명	서울특별시 노원구청	부서명	부동산정보과
	출	주 소	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		
	처	연락처	☎ 02-2116-3627 FAX 02-2116-4625		

4. 기 타 사 항

가. 공고 기간 만료 시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(송달의 효력 발생)에 따라 본 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(☎02-2116-362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